

투자 위험 등급 4등급(보통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가치성장30 증권자투자신탁 [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가치성장30 증권자투자신탁 [채권혼합]**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가치성장30 증권자투자신탁 [채권혼합]**
-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http://www.ubs-hana.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기준일 : 2018년 06월 29일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18년 07월 23일**
-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수익증권 [1조좌]
-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http://dart.fss.or.kr)
  -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http://kofia.or.kr)  
서면문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 목 차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요약정보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의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붙임] 용어풀이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여,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18.06.29)

## 하나 UBS 가치성장 30 증권자투자신탁 [채권혼합]

[펀드코드 : B7465]

투자 위험 등급 4등급(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하나UBS 가치성장30 증권자투자신탁 [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li> <li>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ul>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p>				
	이 투자신탁은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분류					
집합투자업자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02-3771-7800)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조좌, 1좌단위 모집)		
효력발생일	2018년 07월 23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ubs-hana.com">www.ubs-hana.com</a> )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A	A-E	C	C-E	C-P
	가입제한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되는 수익증권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연금저축계좌를 통 하여 가입할 수 있 으며, 판매수수료 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판매수수료(선취)	납입금액의 0.5%이 내	납입금액의 0.25%이내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보수 (연, %)	판매	0.500%	0.250%	0.900%	0.450%
	운용	0.300%	0.300%	0.300%	0.300%



	신탁업자	0.030%	0.030%	0.030%	0.030%	
	일반사무	0.015%	0.015%	0.015%	0.015%	
	기타	0.010%	0.008%	0.011%	0.008%	
	총보수 비용	0.855%	0.603%	1.256%	0.803%	
※ 주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류 C-F, W, S, C-P, C-P2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i> <li>· 판매, 운용,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 보수는 3개월 후급, 기타보수는 사유발생시 지급합니다.</li> <li>· 수익자는 증권 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 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li> <li>·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ul>				
매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시 이전 : 제2영업일</li> <li>· 17시 경과 후 : 제3영업일</li> </ul>		환매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시 이전 : 제3영업일 기준가 제4영업일 지급</li> <li>· 17시 경과 후 : 제4영업일 기준가 제4영업일 지급</li> </ul>		
기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li> <li>· 공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li> <li>-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li> </ul> </li> </ul>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투자전략

####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모투자신탁	투자목적
하나 UBS 파워증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 수익 추구
하나 UBS 태극유망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우량 중소형주식 등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벤치마크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을 추구.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2)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90% 이상	하나 UBS 파워증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하나 UBS 태극유망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70% 수준 30% 수준
유동성자산		10% 이하*

\*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모투자신탁명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파워증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채권	60% 이상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어음	40% 이하
하나 UBS 태극유망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주식	70% 이상
	채권	30% 이하
	자산유동화증권	30% 이하
	어음	30% 이하

(3) 비교지수(Benchmark) : KOSPI\*30% + 매경 BP 채권지수(3년)\*70%

※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유망중소형모투자신탁과, 국내채권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파워증장기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해 KOSPI\*30% + 매경 BP 채권지수(3년)\*7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 2. 투자전략

###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UBS파워증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70% 수준
하나UBSt태극유망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30% 수준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모투자신탁명	투자전략
하나 UBS 파워증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 기본적으로 만기매칭 중심으로 금리상황에 따른 만기조정하면서, 신용 분석을 통한 우량 금융채 및 회사채 편입 운용합니다. - 스프레드 및 차익거래 등을 활용한 초과수익 추구합니다.
하나 UBS 태극유망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중소형주식중 투자지표에 의해 저평가된 가치주, 미래성장성이 우수한 성장주 및 안정적 주가흐름이 기대되는 배당관련 주식에 집중투자합니다. - Bottom-up Approach에 의한 종목발굴 : field survey 및 기업실적 점검을 통해 증장기 성과 지향합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위험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운용전문인력

### <채권운용>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책임	조익환	1980	부장	11개	8,573억	- KAIST 경영대학원 - 미래에셋자산운용 3.5년



					- (현)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u>부책임</u>	<u>이재승</u>	1970	실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 10 ~ 2005. 11 : 국민은행 신탁자산운용팀</li> <li>- 2005. 11 ~ 2009. 06 : AIG Global Investment 크레딧투자팀</li> <li>- 2009. 06 ~ 2010. 09 : NH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li> <li>- 2010. 09 ~ 2015. 07 : K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분석팀장</li> <li>- 2015. 07 ~ 2017. 04 : 현대증권 FICC 운용전략팀장</li> <li>- 2017. 10 ~ 현재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li> </ul>

주1)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기준일 현재 동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운용>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u>책임</u>	김현지	1981	부장	5개	2,305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런던 정경대학교</li> <li>- 애널리스트 6년</li> <li>- (현)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li> </ul>

주 1) 이 투자신탁은 주식운용본부가 공동 운용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기준일 현재 동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16/11/02~ 2017/11/01	2015/11/02~ 2016/11/01	2014/11/02~ 2015/11/01	2013/11/02~ 2014/11/01	2012/11/02~ 2013/11/01
가치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015-11-02	0.48	-2.48			
비교지수	2015-11-02	7.13	1.48			
가치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A	2015-11-02	0.67	-2.21			
비교지수	2015-11-02	7.13	1.48			
가치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A-E	2015-11-05	0.93				
비교지수	2015-11-05	7.13				
가치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C	2015-11-02	0.27	-2.60			
비교지수	2015-11-02	7.13	1.48			
가치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C-E	2015-11-05	0.73				
비교지수	2015-11-05	7.13				
가치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C-P	2015-11-23	0.69				
비교지수	2015-11-23	7.13				

(주 1) 비교지수 : (KOSPI\*30%)+(매경 BP 국공채1년지수\*7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 (1)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b>투자원본 손실위험</b>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본(이하 '투자원리금')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b>시장위험 및 개별위험</b>	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b>신용위험 및 부도위험</b>	투자적격등급(BBB-) 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b>이자율 변동위험</b>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파생상품 투자위험</b>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 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에 30%수준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으로 판매회사의 위험분류 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3.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 1. 과세

-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재무정보 :

요약재무정보는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중 1. 재무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ubs-hana.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ubs-hana.com)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하나 UBS 가치성장 30 증권자투자신탁 [채권혼합]	B7465
A	B7466
A-E	B7467
C	B7468
C-E	B7469
C-F	B8218
S	B8219
W	B8220
C-P	B8221
C-P2	B8222

#### [모투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하나 UBS 태극유망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하나 UBS 파워증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 1 조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단,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가. 모집기간**

: 2015년 10월 29일 모집개시 이후 추가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http://www.ubs-hana.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모집방법 및 절차**

: 영업일에 판매회사가 정한 기준으로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 판매합니다.

주 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매입, 판매, 전환전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사항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하나 UBS 가치성장 30 증권자투자신탁 [채권혼합]	B7465
A	B7466
A-E	B7467
C	B7468
C-E	B7469
C-F	B8218
S	B8219
W	B8220
C-P	B8221
C-P2	B8222

#### [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하나 UBS 태극유망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하나 UBS 파워중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15년 11월 03일	최초설정일
2015년 12월 14일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추가 반영 및 설명서 업데이트
2016년 04월 29일	모투자신탁의 BM 변경 및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반영 등
2016년 07월 02일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년 12월 27일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2018년 02월 14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 운용전문인력 주석 내용 추가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8년 07월 23일	부책임 운용전문인력 추가(이재승)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



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하나금융투자) (대표전화: 02-3771-7800)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채권운용>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책임	조익환	1980	차장	11개	8,573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KAIST 경영대학원</li><li>- 미래에셋자산운용 3.5년</li><li>- (현)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li></ul>
부책임	<a href="#">이재승</a>	1970	실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02. 10 ~ 2005. 11 : 국민은행 신탁자산운용팀</li><li>- 2005. 11 ~ 2009. 06 : AIG Global Investment 크레딧투자팀</li><li>- 2009. 06 ~ 2010. 09 : NH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li><li>- 2010. 09 ~ 2015. 07: K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채권분석팀장</li><li>- 2015. 07 ~ 2017. 04 : 현대증권 FICC 운용전략팀장</li><li>- 2017. 10 ~ 현재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li></ul>

주1)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이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 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기준일 현재 동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주3)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운용>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u>책임</u>	김현지	1981	부장	5개	2,305억	- 런던 정경대학교 - 애널리스트 6년 - (현)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	-----	------	----	----	--------	---

주 1) 이 투자신탁은 주식운용본부가 공동 운용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기준일 현재 동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해당사항 없음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혼합채권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자투자신탁)

종류별	가입자격
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A-E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C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E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C-F	기관 및 법인 전용 수익증권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 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 증권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W	판매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 특전금정신탁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 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P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UBS파워증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70% 수준
하나UBST태극유망증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30% 수준

※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합니다.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파워증	주요투자대상 채권 60% 이상, 어음 40% 이하



<b>장기채권 증권모 투자신탁[채권]</b>	<b>투자목적</b>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 수익 추구
	<b>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며</li> <li>- 기본적으로 만기매칭 중심으로 금리상황에 따른 만기조정하면서, 신용 분석을 통한 우량 금융채 및 회사채 편입</li> <li>- 스프레드 및 차익거래 등을 활용한 초과수익 추구</li> </ul>
<b>하나 UBS 태극유 망중소형 증권모 투자신탁[주식]</b>	<b>주요투자대상</b>	국내주식 70% 이상, 채권 30% 이하
	<b>투자목적</b>	우량 중소형주식 등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종장 기적으로 벤치마크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을 추구.
	<b>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형주식중 투자지표에 의해 저평가된 가치주, 미래 성장성이 우수한 성장주 및 안정적 주가흐름이 기대되는 배당관련 주식에 집중투자</li> <li>- Bottom-up Approach에 의한 종목발굴 : field survey 및 기업실적 점검</li> <li>- 종장기 성과 지향</li> </ul>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자집합투자기구

####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b>모투자신탁 수익증권</b>	<b>90% 이상</b>	파워중장기채권모투자신탁, 유망중소형증권모투자신탁
<b>하나 UBS 파워중장기채 권 증권모투자신탁[채 권]</b>	70% 수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비교지수의 섹터별, 잔존만기별 비중, 및 드레이션을 바탕으로 기본 포트폴리오 구성
<b>하나 UBS 태극유망중소 형 증권모투자신탁[주 식]</b>	30% 수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을 우량중소형 주식 등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투자
<b>기타</b>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b>유동성자산</b>	1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li> <li>- 금융기관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li> </ul>
--------------	---------	---

\*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합니다.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에서 열거한 모신탁 및 유동성자산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b>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 매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li> <li>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li> </ul> </li> </ul>	

### (3) 기타 제한 사항

####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나. 모집합투자기구

### (1) 투자대상

#### - 하나 UBS 태극유망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7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 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이상으로 한다.
2.채권	3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자산유동화 증권	3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어음	3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5.주식및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는 30% 까지 투자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8.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포함)

#### - 하나 UBS 파워증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채권	60% 이상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2.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
4. 금리스왑 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5.집합투자증권	40%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6.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매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7.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8.증권의 차입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9.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2) 투자제한

### - 하나 UBS 태극유망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 매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단, 본문만 해당)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p>	
<b>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b>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p>	
<b>파생상품 투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li> <li>-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li> <li>-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li> <li>-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li> </ul>	<p>최초설정일 로부터 1월 간 적용예외제 외</p>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	--

- 하나UBS파워증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매 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li> <li>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 매매 · 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가목 ·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 · 예탁하여 취득한 채권</li> </ul>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동일 집합 투자기구 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li> <li>-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li> </ul>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한도초과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 제4호 내지 제8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li> <li>B. 투자신탁의 일부해지</li> <li>C.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li> <li>D.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li> <li>E.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li> </ul>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 ■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UBS파워증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70% 수준
하나UBST태극유망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30% 수준

※ 수준이라 함은 ±10% 범위내를 말합니다.

※ 모신탁에의 투자비율은 가격변동으로 인한 편입비율 조정 이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투자비율을 조정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 ■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 비교지수: KOSPI\*30% + 매경 BP 채권지수(3년)\*70%

가)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유망중소형모투자신탁과, 국내채권시장에 주로 투자하는 파워증장기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비교를 위해 KOSPI\*30% + 매경 BP 채권지수(3년)\*7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 - 하나 UBS 태극유망중소형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가. 투자전략

- 운용원칙
  - 중소형주식중 투자지표에 의해 저평가된 가치주, 미래성장성이 우수한 성장주 및 안정적 주가흐름이 기대되는 배당관련 주식에 집중투자
- 자산운용의 기본방침
  - Bottom-up Approach(기업분석->산업분석->경제분석)의 예 의한 종목발굴 :
  - 산업조사 및 기업실적 점검
  - 중장기 성과 지향
    - 주가가 기업가치를 반영할 때까지 장기 보유전략
    - 산업 및 기업실적 점검을 통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 철저한 펀더멘털에 의한 투자성과는 중장기 투자에 적합
- 비교지수: **(Largecap\*10%)+[(Midcap\*80%)+(Smallcap\*20%)]\*80%**  
**+ (KOSDAQ100\*10%)**

-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소형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Largecap\*10%)+[(Midcap\*80%)+(Smallcap\*20%)]\*80%+(KOSDAQ100\*1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각 Largecap, Midcap, Smallcap 지수는 거래소 홈페이지 (<https://index.krx.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소형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 기구로서, 증권(특히, 중소형주)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운용 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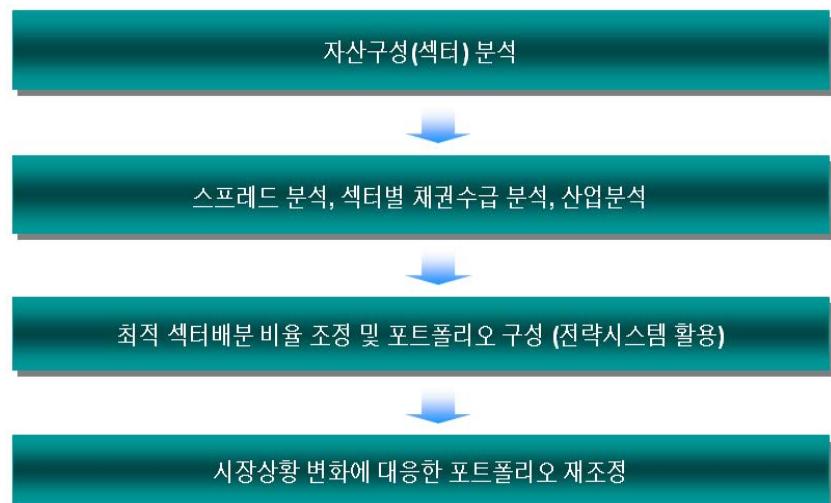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하나 UBS 파워증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 ■ 투자전략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 등 우량채권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며 조직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1) 국내 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
  - 2) 비교지수의 섹터별, 잔존만기별 비중 및 듀레이션을 바탕으로 기본 포트폴리오 구성
  - 3) 시장 분석을 통한 듀레이션 전략과 국채, 특수채, 은행채, 회사채 등 채권 분류간 배분전략, 그 밖에 이종 채권간 상대가치(Relative Value) 분석에 근거한 전략 등을 활용하여 초과 수익을 제고
- 가. 듀레이션 전략: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리 변동성을 활용한 장단기 목표듀레이션 설정, 강세 및 약세시장에서 비교지수의 듀레이션  $\pm 0.3$  년 범위 내에서 운용
- 나. 섹터배분 전략:



다. 상대가치(Relative Value) 전략 : 기존종목간 상대가치, 지표-비지표 채권간 상대가치, 유동성 프리미엄 트레이딩, 현금흐름 분석을 통한 상대가치 분석을 통해 추가수익 기회 추구

##### ■ 비교지수(Benchmark) : KIS 국공채시장지수

이 집합투자기구는 적극적인 채권 운용을 통한 성과를 추구하므로 KIS 국공채시장지수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

니다. 이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나. 위험관리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 다. 수익구조

-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채권 및 어음 등 자산의 가격 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성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특수위험 :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기타 투자위험 등 :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본(이하 '투자원리금')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b>시장위험 및 개별위험</b>	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및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b>신용위험 및 부도위험</b>	투자적격등급(BBB-) 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b>이자율 변동위험</b>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파생상품 투자위험</b>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b>투자전략위험</b>	이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재산의 일부를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주식)은 중소형주식 중 투자지표에 의해 저평가된 가치주, 미래성장성이 우수한 성장주 및 안정적 주가흐름이 기대되는 배당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다른 주식형 투자신탁에 비해 수익률의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b>집중위험</b>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주식)은 중소형주식에 집중투자하므로 모투자신탁(주식)의 운용성과 및 위험이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위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b>유동성 위험</b>	유가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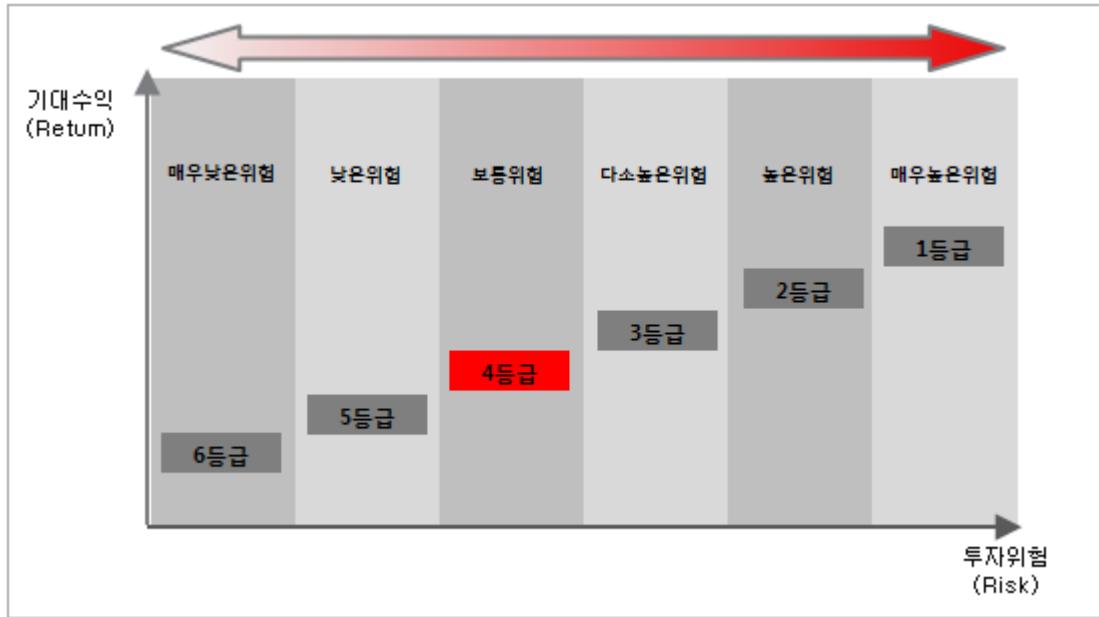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b>환매에 따른 위험</b>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b>집합투자기구 해지 위험</b>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b>대량환매 위험</b>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에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량 환매의 발생시 환매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b>기준가격 산정 오류 위험</b>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수익자, 기존 수익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b>기타위험</b>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에 30%수준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주) 이 투자신탁은 추후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 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 최직근 결산일 기준 설정된 후 3년이 미경과한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11. 매입, 판매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

### 가. 매입

####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A-E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C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E	온라인(On-line) 전용 수익증권
C-F	기관 및 법인 전용 수익증권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 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
W	판매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 특전금정신탁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P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매입청구일)	(기준가격적용일)	

##### 2) 오후 5 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T+2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3)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나 수익증권 매입시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가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나. 환매

#####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

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2일	T+3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 2)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3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및 환매대금지급일	

※ 환매시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나 수익증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 [오후 5 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7 시[오후 5 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 (5)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 1)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 4)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5)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6)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7)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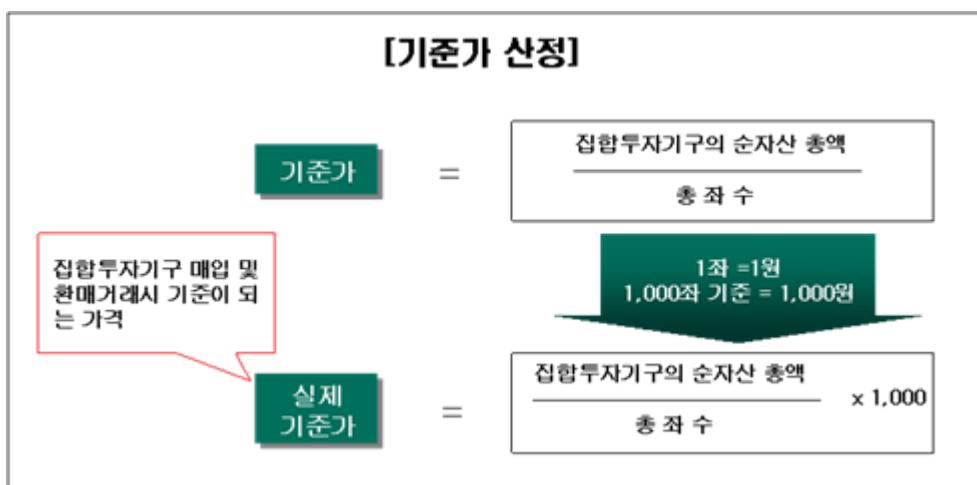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p>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p> <p>※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신탁재산을 모두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두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두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p>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b>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b>	<p>[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p> <p>[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a href="http://www.ubs-hana.com">www.ubs-hana.com</a>)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p>
---------------------------	--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구 분	내 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증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 중 낮은 가격
비상장 외화표시유가증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 시기
	종류 A	종류 A-E	종류 C	종류 C-E	종류 C-F	
집합투자업자보수	0.300%	0.300%	0.300%	0.300%	0.300%	
판매회사보수	0.500%	0.250%	0.900%	0.450%	0.030%	
신탁업자보수	0.030%	0.030%	0.030%	0.030%	0.03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5%	0.015%	0.015%	0.015%	0.015%	
보수합계	0.845%	0.595%	1.245%	0.795%	0.375%	
기타비용 <sup>주 1)</sup>	0.010%	0.008%	0.011%	0.008%	실비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sup>주 2)</sup>	0.855%	0.603%	1.256%	0.803%	0.375%	
증권거래비용 <sup>주 3)</sup>	0.094%	0.094%	0.100%	0.097%	실비	사유발생시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 시기
	종류 S	종류 W	종류 C-P	종류 C-P2	
집합투자업자보수	0.300%	0.300%	0.300%	0.300%	
판매회사보수	0.250%	0.000%	0.500%	0.400%	
신탁업자보수	0.030%	0.030%	0.030%	0.03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5%	0.015%	0.015%	0.015%	
보수합계	0.595%	0.345%	0.845%	0.745%	
기타비용 <sup>주 1)</sup>	실비	실비	0.008%	실비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sup>주 2)</sup>	0.595%	0.345%	0.853%	0.745%	
증권거래비용 <sup>주 3)</sup>	실비	실비	0.091%	실비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2016.11.02~2017.11.01)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년도(2016.11.02~2017.11.01)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1,000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137	325	532	1,146
종류 A-E	87	220	366	802
종류 C	125	395	693	1,576
종류 C-E	126	396	694	1,579



종류 C-F	80	253	443	1,010
종류 W	35	111	195	445
종류 S	61	192	337	767
종류 C-P	85	269	471	1,073
종류 C-P2	76	239	420	955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2016년 7월 1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3)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는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b>수령요건</b>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b>공제제도</b>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
<b>연금수령시 과세</b>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b>분리과세한도</b>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b>연금외 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b>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b>해지가산세</b>	없음
<b>연금외 수령시 부득이한 경우</b>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b>연금외 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b>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b>연금계좌 승계</b>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의 동 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좌는 소득세법시행령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보아 과세하되, 다음의 사항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합니다.

#### [종전 가입자에 대한 특례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b>해지가산세</b>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b>특별 중도해지 (연금외수령) 사 유</b>	천재지변 저축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주,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치료,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b>특별중도해지 사유시 과세</b>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b>사망으로 인한 해 지시 과세</b>	연금소득 5.5%(종합과세 가능)

\* '13.1.1~'13.2.28 가입한 계좌의 특별 중도해지 사유 및 과세는 소득세법을 적용

(단, 사망으로 인한 해지는 연금소득 5.5% 과세)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① 세액공제(2014.1.1 부터)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FATCA 준수 목적으로, 특정 투자자의 정보가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에 대한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 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7)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기(2015.11.02 - 2016.11.01)	-	-
제2기(2016.11.02 - 2017.11.01)		

주 1) 법시행령 제 264 조(회계감사 적용면제)에 의거하여 동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이 300 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에서 적용 면제되었습니다.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원)

항 목	요약재무정보		
	제 2 기	제 1 기	
	2017.11.01	2016.11.01	
운용자산	758,946,828	2,154,180,781	0
유가증권	728,471,084	2,130,343,962	0
현금 및 예치금	30,475,744	23,836,819	0
기타자산	768	4,702,447	0
자산총계	758,947,596	2,158,883,228	0
기타부채	942,461	0	0
부채총계	942,461	0	0
원본	758,005,135	2,189,057,094	0
이익조정금	0	-30,173,866	0
자본총계	758,005,135	2,158,883,228	0
운용수익	7,342,957	63,571,965	0
이자수익	214,222	745,583	0
배당수익	1,500,886	0	0
매매/평가차익(손)	5,627,849	62,826,382	0
당기순이익	7,342,957	63,571,965	0

#### 나. 대차대조표

(단위: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2 기	제 1 기	
	2017.11.01	2016.11.01	
운용자산	758,946,828	2,154,180,781	0
현금및예치금	30,475,744	23,836,819	0
현금및현금성자산	30,475,744	23,836,819	0
유가증권	728,471,084	2,130,343,962	0
수익증권	728,471,084	2,130,343,962	0
기타자산	768	4,702,447	0
매도유가증권미수금	0	4,701,847	0
미수이자	768	600	0
자 산 총 계	758,947,596	2,158,883,228	0
기타부채	942,461	0	0
기타미지급금	942,461	0	0
부 채 총 계	942,461	0	0
원 본	758,005,135	2,189,057,094	0
이익잉여금	0	-30,173,866	0
자 본 총 계	758,005,135	2,158,883,228	0
부채 및 자본 총계	758,947,596	2,158,883,228	0
총좌수	758,005,135	2,189,057,094	0
기준가격	1,000	986	0

####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2 기	제 1 기	
	2016.11.02 - 2017.11.01	2015.11.02 - 2016.11.01	
운 용 수 익(또는 운 용 손 실)	7,342,957	63,571,965	0
투자수익	1,715,108	745,583	0
이자수익	214,222	745,583	0
배당금수익	1,500,886	0	0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4,973,513	130,603,644	0



지분증권매매차익	16,157,885	130,603,644	0
지분증권평가차익	8,815,628	0	0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9,345,664	67,777,262	0
지분증권매매차손	19,345,664	53,512,237	0
지분증권평가차손	0	14,265,025	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7,342,957	63,571,965	0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6	15	0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하나UBS가치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5/11/02~2016/11/01	60	60	9,644	9,555	7,455	7,459	2,189	2,159
2016/11/02~2017/11/01	2,189	2,159	313	308	1,744	1,715	758	759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가. 종류형펀드

하나UBS가치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A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5/11/02~2016/11/01	0	0	2,584	2,553	1,955	1,948	628	615
2016/11/02~2017/11/01	628	615	136	132	357	348	408	401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하나UBS가치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A-E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5/11/05~2016/11/01	0	0	72	71	11	11	61	59
2016/11/02~2017/11/01	61	59	27	27	50	48	38	38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5/11/02~2016/11/01	60	60	6,911	6,839	5,445	5,420	1,467	1,429
2016/11/02~2017/11/01	1,467	1,429	141	137	1,314	1,270	294	287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5/11/05~2016/11/01	0	0	87	87	40	39	48	47
2016/11/02~2017/11/01	48	47	13	12	32	31	28	28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5/11/23~2016/11/01	0	0	4	4	1	1	3	3
2016/11/02~2017/11/01	3	3	0	0	0	0	3	3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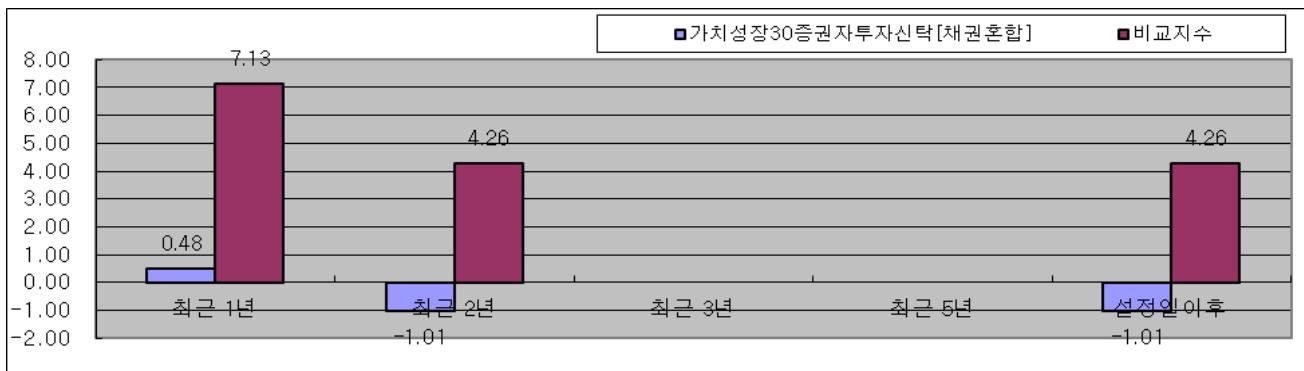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가. 연평균수익률 (세전기준)

(기준일 : 2017년 11월 1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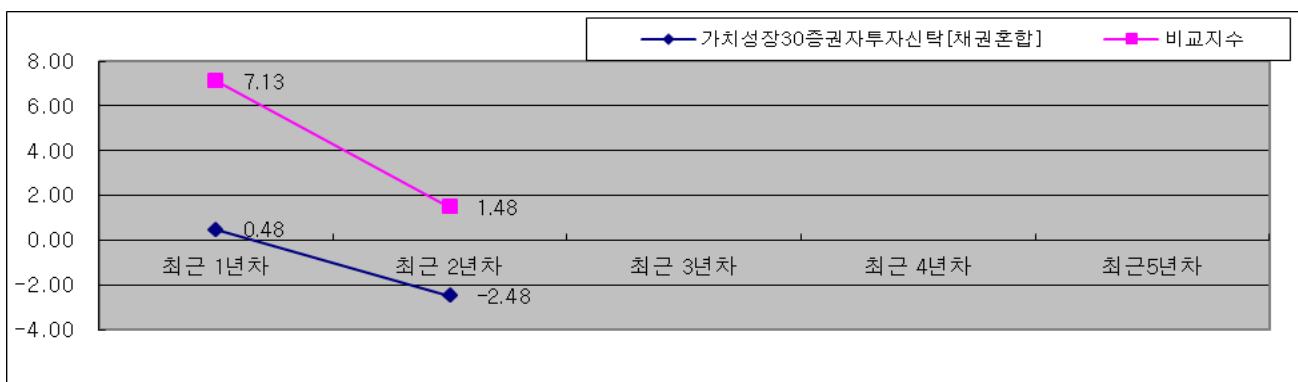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16/11/02~2017/11/01	2015/11/02~2017/11/01	2014/11/02~2017/11/01	2012/11/02~2017/11/01	(%)
가치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015-11-02	0.48	-1.01			-1.01
비교지수	2015-11-02	7.13	4.26			4.26
가치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A	2015-11-02	0.67	-0.78			-0.78
비교지수	2015-11-02	7.13	4.26			4.26
가치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A-E	2015-11-05	0.93				-0.50
비교지수	2015-11-05	7.13				4.14
가치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C	2015-11-02	0.27	-1.17			-1.17
비교지수	2015-11-02	7.13	4.26			4.26
가치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C-E	2015-11-05	0.73				-0.70
비교지수	2015-11-05	7.13				4.14
가치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C-P	2015-11-23	0.69				-0.18
비교지수	2015-11-23	7.13				4.83

(주 1) 비교지수 : (KOSPI\*30%)+(매경 BP 국공채 1년지수\*7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나. 연도별수익률 (세전기준)

(기준일 : 2017년 11월 1일,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16/11/02~2017/11/01	2015/11/02~2016/11/01	2014/11/02~2015/11/01	2013/11/02~2014/11/01	2012/11/02~2013/11/01
가치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015-11-02	0.48	-2.48			
비교지수	2015-11-02	7.13	1.48			
가치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A	2015-11-02	0.67	-2.21			
비교지수	2015-11-02	7.13	1.48			
가치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A-E	2015-11-05	0.93				
비교지수	2015-11-05	7.13				
가치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C	2015-11-02	0.27	-2.60			
비교지수	2015-11-02	7.13	1.48			
가치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C-E	2015-11-05	0.73				
비교지수	2015-11-05	7.13				
가치성장3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ClassC-P	2015-11-23	0.69				
비교지수	2015-11-23	7.13				

(주 1) 비교지수 : (KOSPI\*30%)+(매경 BP 국공채 1년지수\*7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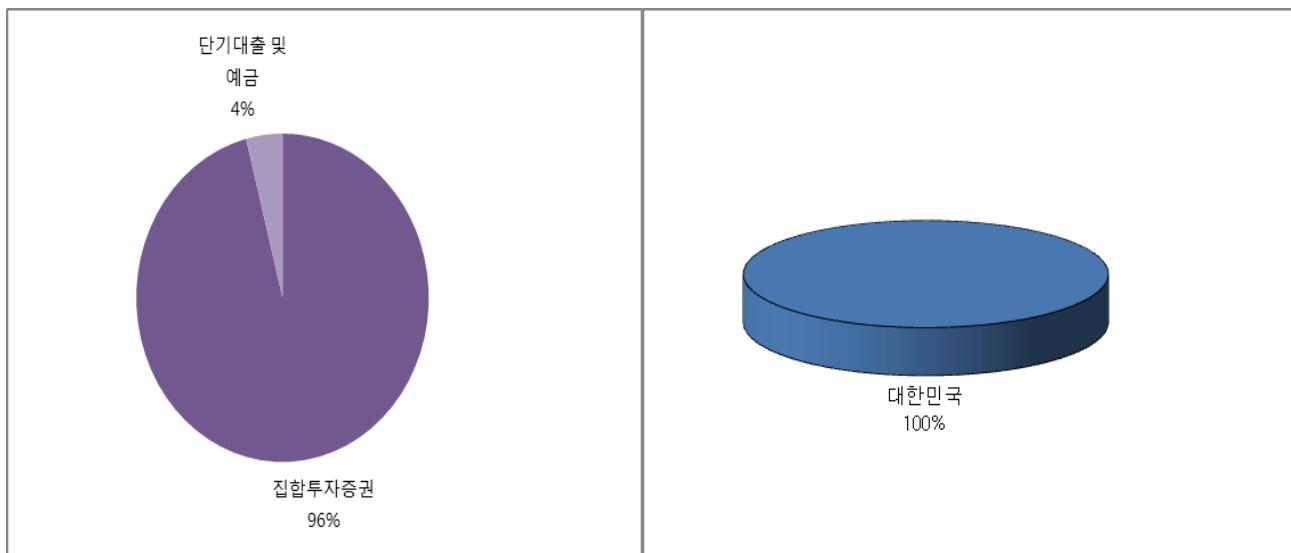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 2017.11.1 현재 / 단위 : 백만원,%)

가치성장30증권자[채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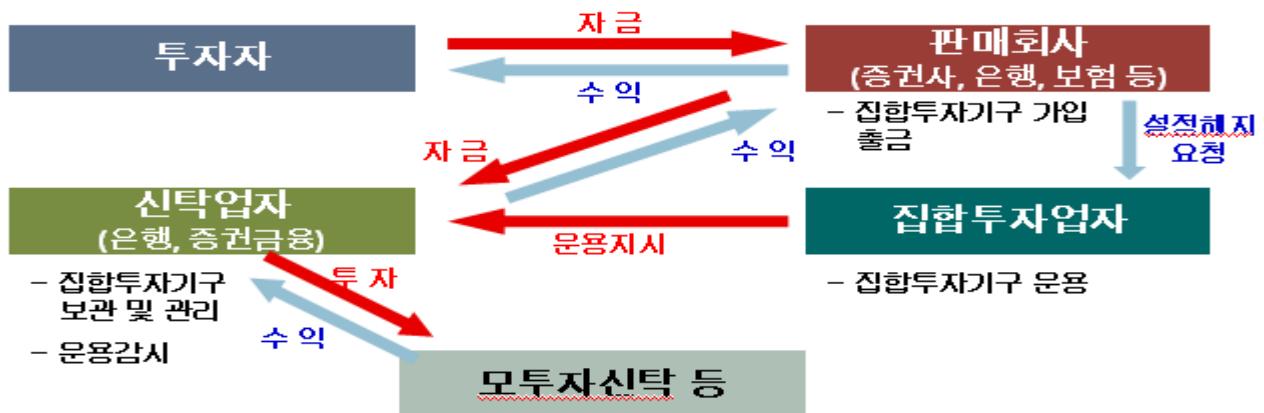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대한민국	0	0	0	728	0	0	0	0	0	30	0	759
	(0.00)	(0.00)	(0.00)	(95.98)	(0.00)	(0.00)	(0.00)	(0.00)	(0.00)	(4.02)	(0.00)	(100.00)
자산합계	0	0	0	728	0	0	0	0	0	30	0	759
	(0.00)	(0.00)	(0.00)	(95.98)	(0.00)	(0.00)	(0.00)	(0.00)	(0.00)	(4.02)	(0.00)	(100.00)

(주 1)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개요

회사명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하나금융투자빌딩) (02-3771-7800, <a href="http://www.ubs-hana.com">www.ubs-hana.com</a> )
회사연혁	1968.12.16 한국투자공사 설립 1970. 5.20 한국투자공사 증권투자신탁업무 시작 1977. 2.14 한국투자공사 대한투자신탁과 증권감독원으로 분리 2000. 6. 4 증권사 전환으로 대한투자신탁증권(주)로 사명 변경 2000. 6.27 대한투자신탁운용(주) 설립(대한투자증권(주) 전액출자) 2000. 7. 1 영업개시 2007.7.27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자본금	450억
주요주주현황	UBS AG, 하나금융투자(주)

##### 나. 주요업무

- (1) 주로 수행하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 기타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규정한 사항
- (2) 의무와 책임
  -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 목	17.12.31	16.12.31	항 목	17.12.31	16.12.31
현금및예치금	67,632	63,492	영업수익	30,994	31,511
유가증권및대출채권	2,119	2,497	영업비용	17,272	17,259
유형자산및기타자산	7,240	8,832	영업이익	<b>13,721</b>	<b>14,252</b>
<b>자산총계</b>	<b>77,304</b>	<b>74,821</b>	영업외수익	238	164
기타부채등	3,933	3,766	영업외비용	29	43
예수부채	1,812	-	-	-	-
<b>부채총계</b>	<b>5,745</b>	<b>3,766</b>	경상이익	<b>13,931</b>	<b>14,374</b>
자본금	45,000	45,000	특별이익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389	486	특별손실	-	-
이익잉여금	26,021	25,570	법인세	3,349	3,227
<b>자본총계</b>	<b>71,559</b>	<b>71,055</b>	당기순이익	<b>10,582</b>	<b>11,146</b>

라. 운용자산규모(2018년 06월 29일 기준 / 억원)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	MMF	파생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총 계
36,772	8,439	21,478	7,570	129,451	11,178	690	4,785	149	220,512

※ 위 수치는 일임계약 금액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가. 신탁회사

###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충정로 1 가) (T:1588-2100)
홈페이지	<a href="http://www.nonghyup.com">www.nonghyup.com</a>

###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3) 의무와 책임

- 의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 ·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3.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5.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6.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7.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지의 여부
- 책 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다동길 43 (다동) (Tel : 6714-4615)
홈페이지	<a href="http://www.hanais.co.kr">www.hanais.co.kr</a>

##### (2) 주요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간접투자자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 (3) 의무와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한국자산평가	(110-7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운니동 98-5) 삼환빌딩 4층 (02)2251-1300 - <a href="http://www.koreaap.com">http://www.koreaap.com</a> -설립일: 2000.05.29 / 등록일: 2000.07.01 -자본금: 50억원
NICE 피엔아이	(150-9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여의도동) (02)398-3900 - <a href="http://www.nicepni.com/">http://www.nicepni.com/</a> -설립일: 2000.06.16 / 등록일: 2004.06.29 -자본금: 55.5억원
KIS 채권평가	(150-8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여의도동)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02)3215-1400 - <a href="http://www.bond.co.kr">http://www.bond.co.kr</a> -설립일: 2000.06.20 / 등록일: 2004.06.29 -자본금: 30억원
에프앤자산평가	(110-7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인사동) 태화빌딩 4층 (02) 721-5300 - <a href="http://www.fnpricing.com/">http://www.fnpricing.com/</a> -설립일: 2011.06.09 / 등록일: 2011.9.23 -자본금: 50억원

(2) 주요업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3) 연기수익자총회

-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투자신탁의 합병(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

니다.

####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증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



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증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3) 투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법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 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법 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ubs-hana.com](http://www.ubs-hana.com))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 및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 ·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 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

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증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선정기준
<투자증권거래>	<p>①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증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지는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li><li>2. 거래 유형(예: 상장 주식 블록 매매, 장외주식 매매, 파생거래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li><li>3. 증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li></ol> <p>② 선정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정기적인 증개회사 평가를 통해 증개회사와 증개회사 서비스의 양적, 질적 변화를 반영한다.</li><li>2. 운용 관련 인력 전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가중치는 달라질 수 있다.</li><li>3. 세부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한 규칙(Broker Vote Policy)에 따른다.</li><li>4. 세부 선정 기준에 따라 증개사를 평가하고, 그 순위에 따라 증개회사별 매매 배분한다.</li><li>5. 증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은 준법 감시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li><li>6. 운용역은 트레이더에게 상기 증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증개회사에 매매위탁을 지정할 수 없다. 단, 블록트레이딩(Block trading) 등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고객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는 한, 사전에 결정된 증개회사별 매매 배분 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li></ol> <p>③ 증개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이 기준에서 편의수혜라 함은 회사가 증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하면서 지급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태에 관계없이 회사가 증개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말한다.</li><li>2. 회사가 편의수혜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조사분석,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증개수수료의 할인에 한한다.</li><li>3. 운용역 또는 트레이더는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 및 편의수혜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자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li></ol>

<장내파생상품거래  
>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 옵션과 유사합니다.